

공지사항

- 1.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2.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1. ① ~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- 2. ④ ~ ⑪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한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- 3. ⑫ ~ ⑰란은 재취직하지 않고 청구인 자신이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(장)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- 4. ⑦란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.
- 5. ⑧란은 재취직한 사업장으로부터 취직이 확정되었음을 유선, 서면 등으로 처음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.
- 6. ⑨란에는 재취업 후 1년간 받은 월평균 임금(세금 등 각종 공제 전의 금액)을 적습니다. 다만,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평균 임금액을 적습니다.
- 7. ⑩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, ⑪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인이 재취직한 사업장과 ⑩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.
- 8. ⑮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“개업 연월일”을 적습니다.
 - ※ 자영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,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.
- 9. ‘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’의 예시
 - 임대차계약서, 과세 증명자료(세금계산서, 부가가치세 신고서, 매출전표 등), 급여명세서(보험설계사, 프리랜서 등의 경우)
 - ※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완화된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. 이 경우에도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처리절차

